

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072
----------	------

2022년 2월 21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1월 21일 이성배 의원(찬성24명)
2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3. 상정일자 :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2월 1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성배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시장으로 하여금 임신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□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(안 제4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「모자보건법」제10조의5<sup>1)</sup>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.
-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출산 지원·장려 방안일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한편 산전·산후우울증 유병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, 50-70%의 산모에서 경증의 산후우울감, 8-20% 정도가 산후우울증, 0.14-0.26% 정도가 정신 이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<sup>2)</sup>,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

1) 「모자보건법」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.4%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<sup>3)</sup>).

- 참고로 「모자보건법」을 근거로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 시 산전·후 우울증 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또한 자치구마다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12조 6,108억원을 지원하고, 2021년도 3조 1,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<sup>4)</sup>, 매해 전국 최저의 출산율 및 2020년 기준 0.64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.
- 특히 산모의 정신건강은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, 이후 산모의 추가 출산의 결정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<sup>5)</sup> 향후 개정안에 따른 산전·산후우울증을 포함한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---

2) 대한산부인과학회(2019). 산과학(개정 6판). 서울: 군자출판사.; 이재희·이정림·엄지원·김희선(2020),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, 육아정책연구소, pp. 42. 재인용.

3) 이소영·김은정·박중서·변수정·오미애·이상림·이지혜(2018),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·복지 실태조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176.

4) “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(2021~2025)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”(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-6488, 2021.3.15.)

5) 이소영·임지영·홍진효(2017),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14, 153.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산전·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기대, 김재형,  
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  
김태수, 김화숙, 김희걸,  
노식래, 문병훈, 박기열,  
박기재, 박순규, 오현정,  
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 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2012000000016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이성배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20

회신일 : 2022.01.20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###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

○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≍ 250,000천원  
= 연 50,000천원 x 5년

※ 2022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조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